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1. 21 선고 2019가단2177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승계참가인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10.

판 결 선 고 2022. 1. 21.

주 문

1.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A 부분의 지상 건물 0.5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(원고의 소는 취하간주되었다).1)

이 유

직권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본다.

원고승계참가인은 2019. 8. 14. C와 D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위에 주택

건축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, 원고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.

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,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,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목적인 권리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이전되는 되는 경우를 말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는 E가 2021. 9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,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목적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이희경



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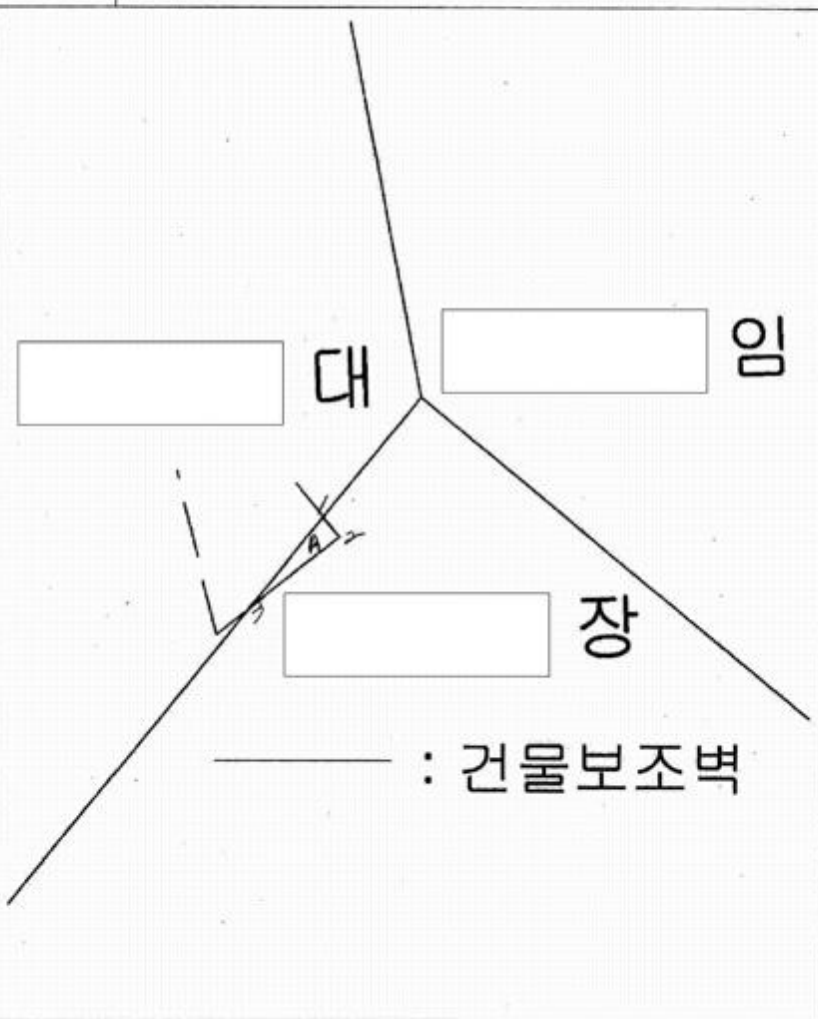
1. 경기도 광주시 공장용지 469㎡

- 이 상 -

참 고 도

토지소재

경기도 광주시



- 1)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다.